

2

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용** : 국내·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30백만원

- ① 프로그램 :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·기술 진단,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
- ② 해외시장 진출자금 : 액셀러레이팅 참여 목적의 국내외 여비, 해외법인 설립 및 지재권 취득 등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원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
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	<p>• 참여기업별 글로벌 진출 KPI 수립, 국내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 (예시)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4a460;">국내 프로그램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4a460;">해외 프로그램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4a460;">자율 프로그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PI 수립 · 산업기술 교육 · IR 피치덱 제작 등 </td> <td>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 파트너사 미팅 · 투자유치 IR · 현지 PoC 지원 </td> <td>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R 로드쇼 · 성과교류회 · 알룸나이 등 </td> </tr> <tr> <td>4주</td> <td>6주</td> <td>2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내 프로그램	해외 프로그램	자율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PI 수립 · 산업기술 교육 · IR 피치덱 제작 등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 파트너사 미팅 · 투자유치 IR · 현지 PoC 지원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R 로드쇼 · 성과교류회 · 알룸나이 등 	4주	6주	2주
	국내 프로그램	해외 프로그램	자율 프로그램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KPI 수립 · 산업기술 교육 · IR 피치덱 제작 등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 파트너사 미팅 · 투자유치 IR · 현지 PoC 지원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R 로드쇼 · 성과교류회 · 알룸나이 등 								
4주	6주	2주								
	<p>* 전체 프로그램은 10주 이상으로 해외 프로그램은 최소 4주 이상 구성됨</p> <p>** 상기 프로그램(안)은 예시이며 참여기업 선정 후 주관기관별 구체화 예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KPI 수립) 현지 법인 설립, 해외 투자유치,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- (국내 프로그램)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, BM 피봇팅,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- (해외 프로그램) 현지 비즈니스 미팅, 투자유치 IR,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- (자율 프로그램) 성과 교류회,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,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									
글로벌 진출 자금	<p>• 지재권 취득비, 국내·외 출장을 위한 여비,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</p> 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4a460; padding: 5px;">총 사업비 :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</p>									

< 총 사업비 구성(예시) >

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0%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4,286만원 (100%)	3,000만원 (70%)	429만원 (10%)	857만원 (20%)

-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: 현금(10% 이상) + 현물(20% 이하)
- 자기부담사업비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
-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사업비 비목 >

비목	비목정의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
지급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술이전비)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• (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)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소요되는 비용 • (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) 국내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 임차비용 • (시험·인증비)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·시스템·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• (서버 이용료)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, GPU 서버 등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• (통번역비)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외국어로의 통번역이 • (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) 창업아이템의 해외 반출, 수출시 발생하는 운반비, 보험료 및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• (비자발급 및 여행자보험) 국외 출장 목적 비자발급 및 여행자 보험 • (해외법인설립비) 해외 법인 설립시 필요한 소요비용 • (회계감사비)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(의무계상)
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(※ 교통 및 숙박비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및 일비는 불가)
광고선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기업 제품(서비스)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○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

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

< 신산업창업 분야 >

①	인공지능	⑩	자율주행차	⑲	스마트홈
②	빅데이터	⑪	전기수소차	⑳	신재생에너지
③	5G+	⑫	바이오	㉑	이차전지
④	블록체인	⑬	의료기기	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⑤	서비스플랫폼	⑭	기능성 식품	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⑥	실감형콘텐츠	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	㉔	우주
⑦	지능형 로봇	⑯	미래형 선박	㉕	차세대 원전
⑧	스마트 제조	⑰	재난/안전	㉖	양자
⑨	시스템반도체	⑱	스마트시티	㉗	사이버 보안

*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

- (업력 7년 이내) **2018년 4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**
- (업력 10년 이내) **2015년 4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(신사업창업분야 해당시)**

※ 창업일 기준

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
- (법인사업자)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

- 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
- ▶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▶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([참고1] 「창업여부 기준표」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확인)

□ 신청분야

- ①~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(*** 중복신청 불가**)

<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국가, 산업분야 및 선정규모 >

신청구분	지원국가	산업분야	선정규모	해외액셀러레이터	주관기관
①	싱가포르 (싱가포르)	푸드테크, 에그테크 그린바이오	20개사	INNOVATE 360	한국농업 기술진흥원
②	독일(베를린), 핀란드(헬싱키)	국토교통	20개사	BETAHAUS, VERTICAL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
③	미국 (서니베일, 샌프란시스코)	서비스 플랫폼, 빅데이터, 지능형 로봇	20개사	Team of Wakers	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
④	독일 (뮌헨, 베를린, 함부르크, 뒤셀도르프)	기후테크	20개사	Startup Colors	충남창조 경제혁신센터
⑤	미국 (서니베일, 마운틴뷰)	딥테크 (IP-Based)	20개사	plug and play Silicon Valley	한국특허정보원
⑥	미국 (샌프란시스코, 산호세)	에듀테크	15개사	Mind The Bridge	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
⑦	남아공 (요하네스버그, 케이프타운)	기후테크	7개사	AfricArise	한·아프리카재단
⑧	이집트 (카이로)	에이징테크	8개사	plug and play Cairo	
⑨	프랑스 (파리)	우주	10개사	Starburst France	한국우주기술 진흥협회

* 신청구분 ②의 경우, 독일 및 핀란드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함

** 주관기관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 세부내용은 [별첨1] 주관기관 및 해외AC 소개자료 참조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②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, [참고3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글로벌창업 지원사업' [참고4]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(기업)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

** 참여 사업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, 타 수행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의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(기업)

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⑩ 2025년 동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본 사업 참여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대표자 또는 C-level의 의사 결정권자를 포함하여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,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
-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함
-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해외 체류시,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*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
 - * 현지 법규 준수,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,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,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음
-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5.4.14.(월) ~ 5.14.(수) 15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5:00 정각에 종료**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5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7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'**제출완료**' 버튼을 클릭해야 **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7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[별첨2]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, **신청분야(공고문 5페이지 참고) 중 한 개만 신청**
 - *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**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 신청분야 동일 여부 필수 확인**
 - ※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상 신청분야가 상이할 경우, K-Startup 홈페이지 **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**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(붙임1 참고)
 - *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(붙임2 참고)

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[붙임 1] 양식에 작성 [붙임 2] 증빙서류 양식에 첨부	용량제한 30MB
③ 대표자(신청자) 신분증 사본		
④ 사업자 증빙 · (개인) 사업자등록증 ·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		
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		
⑥ 창업유지동의서		
⑦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		
① 영문 인터뷰 발표자료	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	-

5

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

- 평가는 ①요건검토→②서류평가→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,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(서류평가,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)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 절차(안) >

①요건검토	②서류평가	③발표평가	④최종선정
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	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	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	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
주관기관	엑셀러레이터 등	엑셀러레이터 등	창업진흥원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 선정
 - *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
 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창업기업'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
- ③ **발표평가** :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
 -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확인

- * 인터뷰 시간은 기업당 3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
- **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(4대보험 가입 직원)에 한하여 대체 가능

④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- 신청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- *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- *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**

- (서류평가) 비즈니스 모델 수준, 제품 시장 적합성(PMF), 글로벌 진출 및 성장 가능성, 팀빌딩, 참여 의지로 평가지표 구성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사업 적합성	- 사업 참여 목적의 부합성 - 프로그램 참여 의지 -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	20점
비즈니스 모델	-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- 기술의 차별성 및 보유 특허 등 - 고객 분석의 명확성 및 적합성	30점
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	- 글로벌 시장 적합성(PMF) 및 차별화 - 해외시장 진출 준비 정도 - 수익 모델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- 프로그램 참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40점
팀구성 가점	- 대표자, 참여인력의 경험 등 우수성 - 최대 1점	10점 -

-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

구분	참여 사업명	비고
1	도전! K-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수상팀	가점 1점 부여
2	'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최종평가 "최우수" 창업기업	
3	'25년 CES K-스타트업 통합관 멘토링 지원기업	

- *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가점 최대 1점 적용(중복 가점 불가)
- ** 가점 해당 사업 참여여부는 창업진흥원에서 확인하여 주관기관에 공유 예정으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
○ (발표평가) 주관기관별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

*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전 별도 안내 예정

□ 사업 운영일정(안)

공 고		창업기업 신청·접수		요건검토 및 선정평가
중소벤처기업부	▶	K-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: 국번없이 1357	▶	창업진흥원
'25.4.14.(월)		'25.4.14.(월) ~ 5.14.(수)		'25.5~6월
				▼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	창업기업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		선정 공지
창업진흥원, 창업기업(개인, 법인)	▶	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	▶	K-Startup 누리집
~'25.6월 중				~'25.6월 중
				▼
사업수행		중간점검		최종보고 및 점검
창업기업	▶	창업진흥원	▶	창업기업
~'25.11월		'25.8월		'25.12월 중

*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**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**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**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센터 > 기업민원 피해신고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- *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*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,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, 선정 대상에서 제외
 - * 단,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-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'창업기업확인서'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
 - *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(총사업자등록내역, 내역 상 '계속'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창업여부 확인서(창업기업용), 주주명부 등)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일*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함
 - *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(참고4 참조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
- 단,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(참고4 참조)에 이미 '협약 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
-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문의) 신청 희망 기관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

< 주관기관 문의처 >

권역	산업분야	주관기관명	전화번호 / 이메일
남아공, 이집트	기후테크, 에이징테크	한·아프리카재단	☎ 02-722-5115 E) ecd@k-af.or.kr
독일	기후테크	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	☎ 041-536-7828 E) global_ac@ccei.kr
독일, 핀란드	국토교통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☎ 031-389-6537 E) sh.park@kaia.re.kr
미국	에듀테크	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	☎ 02-6959-2953 E) geou3@ketia.kr
	서비스플랫폼, 빅데이터, 지능형 로봇	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	☎ 02-2156-2381 E) global@koef.or.kr
	딥테크 (IP-Based)	한국특허정보원	☎ 02-6915-1417 E) sungjookim@kipi.or.kr
싱가포르	푸드테크, 에그테크, 그린바이오	한국농업기술진흥원	☎ 063-919-1375 E) minsu2711@koat.or.kr
프랑스	우주	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	☎ 02-6494-0020 E) jaehyunlee@kasp.or.kr

참고 1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동종창업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자회사 여부		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		
	이종	창 업	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연번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- ▶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,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,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(기업)

연번	업태명
1	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2	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, 개발 및 판매
3	가상화폐 거래소업
4	가상화폐 개발업
5	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
6	가상자산 취급업
7	가상자산의 교환, 이전, 매매업
8	암호화폐 공개(ICO)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

* 단,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

** 기준 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참고 3**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제외사업 목록**

-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(2011~2015년)
-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(2016년)
-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2017~2024년)

참고 4**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(기관)
글로벌		
1	· 글로벌스타트업육성(AI 특화 액셀러레이팅)	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
2	· K-스타트업센터(KSC)	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
3	·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	문화체육관광부(한국관광공사)
4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